

---

## 제2부

# 주요 언론조정사례

---

### 제7장

### 기각 및 각하 사례



## 제7장

# 기각 및 각하 사례

### 기각 및 각하 사례 1 2023서울조정1853·185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언론사가 게재한 인터뷰 영상에 신청인과 소송 중인 사람이 등장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과 관련, 신청인이 특정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도심에서 발생한 흥기난동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방문한 시민들을 인터뷰해 해당 영상을 관련 보도와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자신과 소송 중인 사람이 보도 영상에 등장해 여론을 조작하였으며, 이러한 기만행위가 신청인과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정보도와 1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이 지명되거나 특정되지 않았고, 보도내용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추모객 : 젊으신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후략]

**기각 및 각하 사례 2 2023서울조정1994·1995·1996/1997·1998**

**각 정정·반론·손배,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각하

신청인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 납치 및 사망사건 배경에 신청인 회사가 발행한 △△△△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 코인은 브로커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 코인의 발행사 대표인 신청인은 코인 상장 과정에 브로커가 연루된 바 없고, 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신청인은 오히려 △△△△ 코인이 시세조종 피해자이며, 최근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한 혐의로 구속된 가상자산거래소 □□□의 전(前) 직원이 △△△△ 코인 상장 시기에 □□□에서 근무했을 뿐 △△△△ 코인 상장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이 사건 조정신청은 2023년 8월 23일자로 접수되었고 신청서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은 2023년 8월 1일로 기재되었으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의견서에는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들로부터 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기사를 모아 회사 내부망에 올릴 것을 지시한’ 날짜는 5월 3일이라고 기술되어 있어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이와 관련, 신청인은 사업차 외국으로 출국한 날짜가 4월 2일이고, 내부망 아이디 접속 실패나 경찰조사 대응 등으로 8월 1일에 이르러서야 기사를 확인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재부는 4월 5일부터 14일 사이 다수의 언론에서 신청인 회사 발행 코인이 관련되었다는 범죄 사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된 점, 소속 직원이 코인 관련 보도를 신청인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한 이를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여 기사들을 모아 내부 공유망에 올릴 것을

제1부 언론조정위원회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별첨

지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내부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웹 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소와 무관하게 해당 보도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들어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0개 매체의 기사에 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정정·손배, 반론·손배, 또는 단독으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대부분의 사건은 신청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으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1건의 경우 취하(기사수정)로 종결되어 피해가 구제됨

조정대상보도

① · ② · ③ [전략] ◇◇ ○○ 납치·살인 사건의 범행 배경에 가상자산인 ‘△△△△’ 코인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알려진 △△△△ 코인은 상장 과정에서도 브로커가 연루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 코인은 지난 20XX년 XX월 XX일 가상자산 거래소 □□□에 상장됐다.

[중략]

하지만 상장 시기부터 관련 브로커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검에 따르면 코인상장 브로커인 고 모 씨는 △△△△ 등 29개 코인을 상장시켜준 대가로 □□□ 관계자들에게 9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제)를 받고 있다. [후략]